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내란 등 조장 정보의 유통방지〉

■ 조인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630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내란 등 조장 정보의 유통방지(안 제44조의7 제1항 제8호의2 신설 등) ..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조인철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5. 5. 29.

다. 회 부 일 : 2025. 5.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란정보, 명예훼손 정보 또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그 유통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본인 또는 제3자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성·유포하여 폭동, 테러 등 범죄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도구로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본인 또는 제3자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성 또는 유포하여 폭동, 테러 등 범죄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시킴으로써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4조의7제1항제8호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내란 등 조장 정보의 유통방지(안 제44조의7 제1항 제8호의2 신설 등)

가. 개정안 요지

- ‘본인 또는 제3자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이나 왜곡된 사실을 생성·유포하여 내란·폭동·테러 등 범죄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이하 “내란 등 조장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44조의7 제1항 제8호의2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8. (생략) <u><신설></u>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 ----- -----. 1. ~ 8. (현행과 같음) 8의2. <u>본인 또는 제3자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이나 왜곡된 사실을 생성·유포하여 내란·폭동·테러 등 범죄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u>
9. (생략)	9.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7호, 제8호, 제8호의2 및 제9호-----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최근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가 왜곡된 인식을 형성하고 혐오·폭동 등을 조장한다는 우려에 따라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정보통신망에 의한 정보 유통의 경우 그 신속성, 확장성과 익명성, 비대면성에 따라 허위 정보의 유통에 대한 반론권 행사가 용이하지 않고, 군중심리에 따른 비이성적 집단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때¹⁾,
내란, 폭동, 테러 등을 조장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하여 신속하게

1) 헌법재판소 2020. 11. 26. 선고 2016헌마275·606, 2019헌마199(병합)

대응하고 해당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내란 등 조장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불법정보)²⁾에 포함함으로써 해당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 어떠한 정보가 불법정보에 포함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차단을 명할 수 있게 됨³⁾.

2)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 6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3)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 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관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경제적·정치적 이익’ 및 ‘거짓의 사실이나 왜곡된 사실’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경우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개정 앞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의 개념 및 판단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둘째, 내란, 폭동, 테러는 「형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이므로, 내란, 폭동, 테러 등을 조장하는 정보는 정보의 허위·조작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로서 이미 현행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의 불법정보에 해당함.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내란 등 조장 정보를 별도로 불법정보에 추가할 실익이 낮을 수 있음.

<내란·폭동·테러에 관한 처벌규정 예시>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테러단체 구성죄 등) ①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테러를 기획 또는 지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타국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

4.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

② 테러자금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조달·알선·보관하거나 그 취득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 테러단체를 지원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형법」 등 국내법에 죄로 규정된 행위가 제2조의 테러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형에 따라 처벌한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서 내란 등 범죄를 조장하는 허위 조작정보로 인한 사회 혼란을 방지하려는 취지에 공감하나,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치적 목적’ 등 모호하거나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념과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고,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범죄행위로 규제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내란·폭동·테러 등 행위는 형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로서, 이를 조장·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는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의 불법정보에 포함되어 별도의 호 신설의 실익이 없는 측면이 있고, 허위통신에 대한 처벌규정인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⁴⁾이 명확성 원칙 위반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받은 취지를 고려할 때⁵⁾,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목적’, ‘거짓의 사실이나 왜곡된 사실’ 등의 표현은 추상적이거나 의미가 불명확하여 해석에 따라 규제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허위조작정보의 개념, 범위 및 판단기준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는 이미 개별법에서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행위에 관한 정보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개별법상 처벌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경제적·정치적 이익, 왜곡, 조작, 선동 등의 용어가 명확하지 않아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정치적 목적과 내란 등의 범죄와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고 형법 등에 개정안에 따른 행위에

4) 제47조(벌칙) ①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헌바157,2009헌바88(병합)

대한 처벌 근거를 사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목적’, ‘거짓의 사실이나 왜곡된 사실을 생성
· 유포’, ‘범죄를 조장하거나 선동’ 등의 요건이 추상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편,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내란 등 조장 정보의 유통을 방지
하려는 동법 개정안(의안번호 제2209332호, 양부남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 해당 개정안은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 또는
사실의 왜곡·조작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유도하여
내란, 폭동, 테러 또는 이에 준하는 범죄를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유통한 자에 대한 처벌, 관련 계좌의 지급정지, 관련 수익의 몰수·
추징을 규정하려는 것임.

문 의 처
02)6788-5230